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15 선고 2020가합1045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임성도, 김동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미실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소현완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C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9. 10.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285,245,4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와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5,245,4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도금 및 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의 채권자이며, 피고 C는 D의 대표이사 E의 아들이고, 피고 B은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D은 2018. 7. 16.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2018. 7. 16. 기준 200,961,300원이고, D이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되 2018. 7. 말일까지 3,000,000원, 2018. 8. 말일까지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9. 말일부터 2021. 10. 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을 38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4,961,300원은 2021. 11.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D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8년 제244호)를 작성하였다.

다. D은 2019. 9.경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D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E이 원고에게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회에 걸쳐 상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277,123,200원 상당의 채무이행을 연기 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E이 D을 폐업신고한 후 피고 C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사는 2020. 10. 26.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고소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초경부터 2019. 8.경까지 D에게 화학약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85,245,490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D은 2019. 10.경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D이 위 피고에게 D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피고 C(수익자)는 2019. 11.경 피고 B(전득자)에게 이 사건营业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85,245,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가 아니라 H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H이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므로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피고들은 D의營業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즉, H이 D의營業을 양수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피고적격). 설령 피고들이 H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그 명의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피고들에게 금전의 지급까지 구하고 있는바, 실질과 다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2) D은 폐업할 무렵인 2019. 9.경 내지 11.경 특별한 재산이라는 것이 없었으므로, D이營業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존재하고 피고들이 D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등은 H이 실질 당사자이고 피고들은 H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피고 C와 D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가액배상까지 구하는 것은 피고들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D와 피고 C 사이의 법률행위(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피고 C는 수익자의 지위, 피고 B은 전득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가정적으로 이 사건 영업 양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영업 양수 과정에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고들이 D과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영업이 양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9. 10. 1. 'G'이라는 상호로 부산 사하구 I, 3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 B이 2019. 11. 12. 'J'이라는 상호로 위 G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H이 일부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나 H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D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D과 피고들이나 H 사이에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의 가액도 달리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D과 피고 C 사이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D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영업의 구체적 내역 및 그 재산가치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또한 없다(원고는 2021. 11. 17. D이 보유한 영업의 가치 등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2022. 4. 11. 위 신청을 철회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갑 제11호증)에는 D의 대표이사 E의 'H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임차한 장비를 그대로 인계해 주었고, H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진행하였다. D의 운영 당시 장비의 대부분은 K로부터 임차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H의 '2019. 9.경 D의 폐업 후 D의 채무를 인수받아 D의 거래처를 상대로 자신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이전 L의 부도로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 C가 E의 아들임을 이유로 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G을 폐업한 후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J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불기소결정서에는 D의 거래처에서 H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바, H이 D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H이 제출한 K 관리비 입금내역이 E의 주장과도 부합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D이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피고들이 아니라 H로 보일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현, 판사 김도완, 판사 김동민

별지